

의안번호	제 4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6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6 년 6 월 5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연월일 : 2006년 6월 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안제4조~안제9조)
 - 위원구성 : 7인 이내
 - 위원장 : 복지환경국장
 - 위 원 : 민간전문가 3명 이상
 - 기 능 :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 심의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며,

제4조 내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전문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중은행 회계업무 관계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기타 식품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략> ③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4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신설></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전문가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중은행 회계업무 관계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기타 식품관련 사회단체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 ~ 제7조</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 계획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